**세 법**

**2/16**

**제1교시**

**【문제 1】** (25점)

다음은 거주자 홍길동(남자이며 나이는 50세임)의 2004년도 귀속 소득세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중간과정(계산내역 포함)을 반드시 제시할 것)

|  |
| --- |
| (기본가정)  ① <자료1>부터 <자료4>까지의 모든 상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독립된 상황으로 가정한다.  ②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하고, 소득세신고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증빙은 제출된 상태이다.  ③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④ 2004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

<참고자료>

① 근로소득공제액을 구하는 산식

|  |  |
| --- | --- |
|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50% |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

②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율 |
| 1,000만원 이하 | 9%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90만원+(과세표준-1,000만원)×18% |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630만원+(과세표준-4,000만원)×27% |
| 8,000만원 초과 | 1,710만원+(과세표준-8,000만원)×36% |

③ 상속세 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000만원+(과세표준-1억원)×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000만원+(과세표준-5억원)×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000만원+(과세표준-10억원)×40% |
| 30억원 초과 | 10억 4,000만원+(과세표준-30억원)×50% |

**(물음1)**

(1) <자료1>에서 ①번부터 ⑧번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2004년 종합소득에 합산될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2) <자료1>에서 ①번부터 ⑨번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2004년 종합소득에 합산될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3) <자료1>에서 ①번부터 ⑨번까지의 금융소득과 사업소득금액 40,000,000원만 있다고 할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종합소득공제는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자료1>

① 은행정기예금이자 8,000,000원

②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004년에 가입하였으며 보험기간은 6년이다) 12,000,000원

③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3,000,000원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

⑤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7,000,000원

⑥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액면가액은 20,000,000원이고 90일 보유 후 매각하였으며 매매차익 중 보유기간 이자부분이 500,000원 포함되어 있다) 1,500,000원

⑦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로서 지급받은 현금배당액 (주식의 액면가액은 2억원이며 보유기간은 1년 5개월이다) 2,500,000원

⑧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음) 20,000,000원

⑨ 내국법인(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 (주식의 액면가액은 8천만원이며 보유기간은 7개월이다) 13,000,000원

**(물음2)**

<자료2>에서 홍길동이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자료2>

홍길동은 ㈜한국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 귀속 근로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급여 및 상여금 67,000,000원

② 자가운전보조금 (월 300,000원)   3,600,000원

③ 피복비 (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통일된 피복이 아님) 1,000,000원

④ 자녀학자보조금 2,000,000원

⑤ 식사대 (월 200,000원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따로 제공받지 않음) 2,400,000원

⑥ 홍길동의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

부 친 (72세, 소득없음)

모 친 (68세, 소득없음)

배우자 (46세, 소득없음)

장 녀 (24세, 대학원생, 소득없음)

차 녀 (17세, 고등학생, 소득없음)

장 남 (5세)

⑦ 보험료 지출내역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2,000,000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900,000원

장남의 교육보험료 1,200,000원

본인의 생명보험료 (생명보험료는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3,600,000원

⑧ 교육비 지출내역

**세 법**

**제1교시**

**3/16**

본인의 대학원(박사과정) 등록금 4,000,000원

장녀의 대학원(석사과정) 등록금 3,500,000원

차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2,200,000원

장남의 미술학원 수업료 (1일 2시간씩 1주일에 4일 교습을 받음) 1,200,000원

⑨ 의료비 지출내역

본인의 보약구입비 600,000원

부친의 질병치료비 3,800,000원

장녀의 입원치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 4,500,000원

⑩ 신용카드 사용관련 내역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총금액 23,000,000원

(물품구입대금 13,000,000원, 자동차리스에 대한 리스료 6,000,000원, 차녀의 교육비 2,200,000원, 부친의 의료비 1,800,000원)

**(물음3)**

<자료3>에서 홍길동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자료3>

다음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홍길동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  |  |  |  |
| --- | --- | --- | --- |
| 구 분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기간 |
| 상가 및 부수토지 (A) | 600,000원 | 150,000,000원 | 2003.9.1~  2005.8.31 |
| 주택 및 부수토지 (B) | 300,000원 | 30,000,000원 | 2004.7.1~  2006.6.30 |

주) B는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홍길동은 위의 B주택이외에도 3개의 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다.

A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은 2003년 9월 5일에, B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은 2004년 7월 8일에 수령하였고 월 임대료는 A, B 모두 매월 말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임대자산의 취득내역

|  |  |  |
| --- | --- | --- |
| 구분 | 취득일 | 취득가액 |
| A | 2003.8.7 | 부수토지: 300,000,000원  건 물: 70,000,000원 |
| B | 2004.6.15 | 부수토지: 170,000,000원  건 물: 20,000,000원 |

**세 법**

**4/16**

**제1교시**

홍길동은 당해 과세기간 동안 A의 임대보증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수입배당금 3,000,000원과 유가증권처분이익 6,000,000원이 발생하였고 B의 임대보증금으로는 수입이자 750,000원이 발생되었다.

A의 임대와 관련하여 월 400,000원의 관리비(이중에 전기료 100,000원, 수도료 4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를 매월 말일에 추가로 받고 있다.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필요경비는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6,800,000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시부인계산 후의 금액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은 5%이며 장부를 적절히 기장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물음4)**

<자료4>에서 홍길동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홍길섭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홍길동이 홍길섭에게 한 증여는 이번이 처음이고 홍길동은 2004년도에 이건 이외의 양도자산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료4>

거주자 홍길동은 2000년 3월 10일에 취득한 토지(등기된 자산)를 동생 홍길섭에게 2004년 9월 15일에 증여하였다. 증여한 토지에는 대한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 15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동생 홍길섭은 토지를 증여받고 동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① 증여한 토지의 증여당시 자료

(시가: 300,000,000원, 기준시가: 240,000,000원,

지방세시가표준액: 130,000,000원)

② 증여한 토지의 취득당시 자료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음, 기준시가: 160,000,000원, 지방세시가표준액: 90,000,000원)

**【문제 2】** (40점)

다음은 ㈜한국(이하 “회사”라 한다)의 제10기(당기) 사업연도(2004.1.1 ~ 2004.12.31)에 대한 자료이다.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기본가정>  ① 각 물음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② 각 물음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독립적이며 상호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가정한다.  ③ 당기를 포함한 1사업연도(1년)는 365일로 가정하고, 적수 등의 계산시 2월은 28일로 가정한다. |

|  |
| --- |
| <답안작성 요령>  ① 물음의 번호를 기재한다.  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무조정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여부, 세무조정과목, 금액, 소득처분 순으로 기재한다.  ③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산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④ 둘 이상의 세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답한다.  ⑤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없음”으로, 답이 0원인 경우에는 “0원”이라고 명기한다.  ⑥ 소수점 이하의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 금액을 반올림한다.  ⑦ 이상의 요령에 따라 (물음X) (1)의 답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물음X) (1)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000 (유보)  회사계상액 - 세법상한도액 = 5,000 - 4,000 = 1,000 |

**세 법**

**제1교시**

**5/16**

**(물음1)** 다음 자료에 의하여 회사의 매출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회사는 2004.12.1 발생한 현금매출 11,000,000원(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0,000원 포함)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대금은 입금되지 않았으며 그 사유는 불분명하다. 한편, 관련 매출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적절히 회계처리 되었다.

(2) 당기 중 회사는 제품A를 장기할부조건으로 100,000,000원(현재가치평가액 90,000,000원, 매출원가 80,000,000원)에 판매하였다. 회사는 동 장기할부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기 중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0원을 환입하였다. 한편 회사는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 50,000,000원을 당기에 회수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 45,000,000원 및 매출원가 40,000,000원을 각각 당기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3) 회사는 본사 건물 중 일부를 2004.12.1부터 10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임대(월임대료 상당액 10,000,000원, 관련비용 월 8,000,000원)하였으며, 임대료를 매 2년마다 지급(최초 임대료 지급일 2006.11.30) 받기로 계약하였다. 동 임대와 관련하여 당기 중 회사에서 계상한 수입임대료 및 관련비용은 없었다.

**(물음2)** 다음 자료에 의하여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당기말 현재 근속 중인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 |
| 구 분 | 1년이상 계속근무자 | 1년미만 근무자 | 합 계 |
| 임원 급여 및 상여금 | 150,000,000 | 50,000,000 | 200,000,000 |
| 사용인 급여 및 상여금 | 750,000,000 | 250,000,000 | 1,000,000,000 |
| 급여 및 상여금 합계 | 900,000,000 | 300,000,000 | 1,200,000,000 |

주1)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임원의 상여금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를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가 임원과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분배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3,000,000원이 제외되어 있다.

주2)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의 상여금에는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인에게 지급된 상여금 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12,000,000원과 회사가 사용인과의 단체교섭시 목표이익을 정하여 목표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사용인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한 금액 35,000,000원이 제외되어 있다.

주3) 1년미만 근무한 사용인의 급여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의 중간정산기준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 1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당기말 현재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 |
| 구 분 | 1년이상 계속근무자 | 1년미만 근무자 | 합 계 |
| 임 원 | 200,000,000 | 30,000,000 | 230,000,000 |
| 사용인 | 100,000,000 | 20,000,000 | 120,000,000 |
| 합 계 | 300,000,000 | 50,000,000 | 350,000,000 |

**세 법**

**6/16**

**제1교시**

주)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의 중간정산기준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3) 퇴직급여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 --- | --- |
|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증가 | 당기감소 | 기말잔액 |
| 퇴직급여충당금 | 300,000,000 | 200,000,000 | 150,000,000 | 350,000,000 |

주1)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는 세무상 한도초과 부인액 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증가액은 당기 중 전입액이고, 당기감소액은 기중 퇴직금 지급액으로 전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이다.

주2) 회사는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보험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없다.

(4) 당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퇴직금전환금 잔액은 10,000,000원이다.

**(물음3)** 다음 자료에 의하여 회사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회사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회사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정액법상각률 0.200, 정률법상각률 0.451)이다.

(1) 기계장치A의 당기말 대차대조표상 취득가액은 100,000,000원이며, 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0,000원이고, 전기말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은 10,000,000원이다. 기계장치A와 관련하여 회사의 당기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계상액(당기 감가상각누계액 증가금액과 동일)은 20,000,000원이다. 회사는 2004.12.1 기계장치A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12,000,000원과 소모된 부속품 대체비 5,000,000원을 지출하고, 동 비용을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

(2) 회사는 2004.12.1 기계장치B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여 매입 즉시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그 대금은 매 6개월 마다 25,000,000원씩 4회에 걸쳐 지급(최초지급일 2005.6.1) 하기로 계약하였다. 회사는 동 장기할부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B의 가액 100,000,000원에서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90,000,000원을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기계장치B와 관련하여 회사의 당기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20,000,000원이다.

(3) 2004.10.1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양수 당시 동 영업권의 세무상 시가 및 실제취득가액은 50,000,000원이었으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동 영업권과 관련하여 회사의 당기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영업권상각액은 2,000,000원이다.

|  |  |  |  |  |
| --- | --- | --- | --- | --- |
| (차변) | 영 업 권 | | 40,000,000 |  |
|  | 자본잉여금 | | 10,000,000 |  |
|  |  | |  |  |
|  |  | (대변) | 현 금 | 50,000,000 |

**세 법**

**제1교시**

**7/16**

**(물음4)** 다음 자료에 의하여 회사의 출자전환 및 채권ㆍ채무조정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2004.4.1 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법인 乙로부터 액면가액 100,000,000원의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004.12.1 회사는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였으며,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은 100,000,000원, 액면가액은 15,000,000원, 시가는 20,000,000원이었다. 동 채권의 취득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회사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1) 2004.4.1 채권취득 시

|  |  |  |  |  |
| --- | --- | --- | --- | --- |
| (차변) | 채 권 | | 10,000,000 |  |
|  |  | |  |  |
|  |  | (대변) | 현 금 | 10,000,000 |

2) 2004.12.1 출자전환 시

|  |  |  |  |  |
| --- | --- | --- | --- | --- |
| (차변) | 주 식 | | 10,000,000 |  |
|  |  | |  |  |
|  |  | (대변) | 채 권 | 10,000,000 |

(2) 2004.12.30 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법인 丙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관계 유지를 위해 당사자간 합의(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에 해당하지 않음)에 의하여 매출채권 12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면제하고, 100,000,000원은 만기를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는 90,000,000원이며, 회사는 조정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인 10,000,000원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상각비(대변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로 계상하였다. 또한 포기한 채권 20,000,000원을 대손처리하였다. 이 경우, ① 면제하기로 한 채권 20,000,000원에 대한 필요한 세무조정 및 법인세법상 처리방법을 간략히 설명하고, ② 대손상각비 10,000,000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5)** 회사는 당기 중 특수관계가 없는 ㈜소멸을 흡수합병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합병 관련 추정자료에 의하여 아래 (1), (2), (3)에 답하시오.

(1) 피합병법인인 ㈜소멸의 청산소득금액과 그 계산내역을 명기하시오.

(2)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서울의 의제배당소득금액과 그 계산내역을 명기하시오.

(3) 합병법인인 회사의 당기 합병평가차익 과세액(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고려)과 그 계산내역을 명기하시오.

<합병 관련 추정자료>

1. ㈜소멸은 비상장ㆍ비등록 제조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의 합병직전 추정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추정대차대조표 - ㈜소멸

|  |  |  |  |
| --- | --- | --- | --- |
| 유동자산 | 100,000,000 | 부 채 | 50,000,000 |
| 고정자산 | 50,000,000 | 자 본 | 100,000,000 |
| 합 계 | 150,000,000 | 합 계 | 150,000,000 |

1) 고정자산은 건물 40,000,000원과 기계장치 1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소멸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1,000,000원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2,000,000원이 있으며, 그 밖의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3) 자본은 자본금 10,000,000원과 이익잉여금 9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서울은 ㈜소멸의 100% 주주로서 비상장ㆍ비등록 제조중소법인이다. ㈜서울의 장부에 계상된 ㈜소멸 주식의 가액은 취득가액인 10,000,000원이다.

3. 회사가 ㈜소멸을 흡수합병할 경우, 합병시점에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세 법**

**8/16**

**제1교시**

|  |  |  |  |  |
| --- | --- | --- | --- | --- |
| (차변) | 유동자산 | | 100,000,000 |  |
|  | 건 물 | | 50,000,000 |  |
|  | 기계장치 | | 20,000,000 |  |
|  | 영 업 권 | | 30,000,000 |  |
|  |  | |  |  |
|  |  | (대변) | 부 채 | 50,000,000 |
|  |  |  | 자 본 금 | 100,000,000 |
|  |  |  | 주식발행초과금 | 50,000,000 |

합병 시 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승계한 것이고, 영업권은 전액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4. 상기 합병은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이라고 가정한다.

**(물음6)** 다음 자료에 의하여 회사가 수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계산하시오.

(1) 회사는 제10기(당기 2004.1.1 ~ 2004.12.31) 법인세신고ㆍ납부기한 내에 당기 법인세 4,900,000원(기납부세액 차감후 금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항들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당기 법인세를 수정신고ㆍ납부(2005.7.15에 수정신고ㆍ납부)하기로 하였다. 누락사항이 반영된 정확한 법인세 수정신고ㆍ납부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당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법인세비용 차감 후)은 180,000,000원이다.

(3)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당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법인세할 주민세 포함)은 22,000,000원이다.

2) 장부상 대손충당금 당기감소액 1,200,000원은 거래처의 부도발생(부도발생일 2004.4.1)으로 외상매출금(외상매출금발생일 2004.2.1)을 대손처리한 것이며,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접대비 계정에는 접대비 영수증 수취분 1,000,000원(건당 5만원 초과분 600,000원 포함)과 증빙미수취분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4)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세금과공과 계정에는 균등할주민세 100,000원, 교통사고벌과금 60,000원, 교통유발부담금 1,200,000원, 상공회의소 특별회비 100,000원, 산재보험료가산금 250,000원, 소득세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 4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원천징수 대상 미수이자는 130,000원이다.

6)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된 기부금 계정에는 사회복지법인운영비 1,000,000원과 대표이사 동창회비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4) 제10기(당기)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5%이고, 1억원 초과액에 대하여는 27%이다. 회사가 당기 중 납부한 법인세 원천납부세액은 100,000원이며,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은 10,000,000원이다.

(5) 가산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만 산출하되, 부당과소신고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가산세액 계산시 회사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은 10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세 법**

**제1교시**

**9/16**

**【문제 3】** (20점)

**(물음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한강의 2004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매출세액은 60,000,000원이고, 매입세액은 5,000,000원이다. 하지만 이들 금액은 몇 가지 오류가 포함된 잘못 계산된 금액이다.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자료의 항목별로 확정신고서상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적절히 가감하여,

(1) 정확한 매출세액을 계산하시오.

(2) 정확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하거나 교부받았으며 주어진 자료에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강은 납부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에 제시된 사항에 관련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

<자료1>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의 양식을 따를 것

|  |  |  |
| --- | --- | --- |
| 자료  번호 | 내 역 | 금 액 |
|  | 확정신고서상 매출(입)세액 |  |
| ① | (계산근거와 과정을 2줄 이내로 짧게 언급하고,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쓰시오) | (증가는 +,  감소는 -) |
| … |  |  |
| ⑥ |  |  |
|  | 정확한 매출(입)세액 |  |

<자료2> 공통자료

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44 : 56,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40 : 60으로 가정한다.

② 200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자료3> 2004. 4. 1 ~ 2004. 6. 30의 매출세액 관련 사항

① 신고서상 매출세액에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200,000,000원에 매각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② 신고서상 매출세액 산출에 포함된 과세사업에 대한 국내매출액을 계산하면서 매출에누리 2,000,000원과 매출할인 3,000,000원, 대손예상액 800,000원을 차감하였다.

③ 신고서상 매출세액 산출에 포함된 과세사업에 대한 국내매출액 중 30,000,000원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금강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한강은 공급한 제품의 시가로 매출액을 계상하였지만, 취득한 주식의 취득 당일 시가는 32,000,000원이고, 취득한 주식의 액면총액은 15,000,000원이다.

④ 신고서상 매출세액 산출에 포함된 과세사업에 대한 국내매출액 중 20,000,000원은 계약금 5,000,000원을 받은 2004년 6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제품의 인도와 잔금 수수는 2004년 7월 17일에 이루어졌다.

⑤ 신고서상 매출세액 산출에 포함된 과세사업에 대한 국내매출액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수령한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단, 제품의 인도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 A에게 이루어졌으며 A는 4,000,000원은 과세사업에, 6,000,000원은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⑥ 신고서상 매출세액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5,000,000원에 처분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법**

**10/16**

**제1교시**

<자료4> 2004. 4. 1 ~ 2004. 6. 30의 매입세액 관련 사항

① 신고서상 매입세액에는 과세사업과 관련되고 4월 23일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② 신고서상 매입세액에는 과세사업의 영업부 전용 소형승용차 구입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850,000원이 누락되어 있다.

③ 신고서상 매입세액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1,500,000원이 누락되어 있다.

④ 신고서상 매입세액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0,000,000원에 구입한 설비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⑤ ㈜한강은 5월 22일 임산물 원재료 5,100,000원을 면세로 공급받은 바 있으나 이로 인한 신고서상 매입세액의 변동은 없다. 단, 임산물 원재료 사용에 대한 사업별 실지귀속이 불명확하고, ㈜한강의 업종은 음식점업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⑥ ㈜한강은 4월 20일 과세사업에 사용할 비품을 4,500,000원에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비품은 4월 25일에 배달되었고 구입대금은 4월 26일에 지급되었다. 한편 ㈜한강은 4월 30일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불일치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신고서상 매입세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물음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여의도의 2004년 제1기 확정신고를 위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 본사 건물의 사용면적비율은 다음과 같다. ㈜여의도의 2003년 제1기와 제2기, 200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  |  |  |
| --- | --- | --- | --- |
| 구 분 | 2003년 제1기 |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
| 과세사업 | 60%(45%) | 55%(50%) | 70%(35%) |
| 면세사업 | 40%(55%) | 45%(50%) | 30%(65%) |

주) 괄호 안은 본사 건물의 사용면적비율임

㈜여의도가 2003년 제2기 중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구 분 | 취득일 | 취득원가 | 시 가 | 비 고 |
| 기계  장치  A | 2003.11.11 | 10,000,000원 | 5,000,000원 | 과세사업  전용 |
| 기계  장치  B | 2003.7.8 | 20,000,000원 | 10,000,000원 | 과세·면세 사업 겸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단,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차가감 납부세액의 증감근거(1줄 이내)와 계산과정을 명시하고 차가감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면 양수(+)로, 감소시키면 음수(-)로 표시하시오.

(1) ㈜여의도가 2004년 6월 23일부터 기계장치 A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할 때, 2004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 세액에 기계장치 A가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2) 2004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 세액에 기계장치 B가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세 법**

**제1교시**

**11/16**

**(물음3)** 다음은 제과점업(부가가치율 20%)과 음식점업(부가가치율 40%)을 겸영하는 이몽룡씨의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이다. 이몽룡씨는 이전에는 일반과세자였으나 2004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이몽룡씨가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가정할 때,

(1) 2004년 제1기 확정신고 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2) 이몽룡씨의 2004년 제1기의 납부세액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차감납부할 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얼마인가?

<자료>

① 이몽룡씨는 재화와 용역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다. 2004년 제1기의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 | 영수증 발행분 | | 합 계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 제과점업 | 10,000,000 | 1,000,000 | 20,000,000 | 2,000,000 | 33,000,000 |
| 음식점업 | 5,000,000 | 500,000 | 15,000,000 | 1,500,000 | 22,000,000 |
| 합계 | 15,000,000 | 1,500,000 | 35,000,000 | 3,500,000 | 55,000,000 |

②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비품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3,300,000원에 처분하였다.

③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  |  |  |
| --- | --- | --- | --- |
| 구 분 | 업 종 | 매입세액 | 비 고 |
| 세금계산서 | 제과점업 | 2,000,000원 | 30%는 접대비  관련분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음식점업 | 800,000원 | 이면확인분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공통매입세액 | 600,000원 | 이면확인분 |
| 합 계 |  | 3,400,000원 |  |

④ 면세농산물의 매입가액은 제과점업이 4,120,000원이고, 음식점업이 5,150,000원이다.

⑤ 2004년 1월 1일 현재의 제과점업에 관련된 보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 해당 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액이며, 원재료는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거래징수 당하였다.

|  |  |  |  |  |
| --- | --- | --- | --- | --- |
| 구 분 | 취득일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시 가 |
| 원재료 | 2003.6.5 | 2,500,000원 | 2,000,000원 | 1,500,000원 |
| 제과 기계 | 2003.7.2 | 13,000,000원 | 10,000,000원 | 9,000,000원 |

**세 법**

**12/16**

**제1교시**

**【문제 4】** (15점)

**(물음1)**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규정에 대해 약술하시오.

**(물음2)** 2004년 5월 1일 거주자 甲은 거주자 乙에게 토지 1필지를 4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토지의 시가는 800,000,000원이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다. 이를 기초로 다음 물음에 답하라.

(1) 甲과 乙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甲의 양도소득세 계산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乙의 증여세 계산시의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얼마인가?

(2) 甲과 乙이 특수관계 없는 자이고 저가거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甲, 乙의 양도가액과 추정증여가액은 각각 얼마인가?

**(물음3)**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김치국씨는 2004년 6월 15일 허갑부씨로부터 서울소재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를 각각 500,000,000원과 700,0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구입금액의 10%)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04년 7월 20일 잔금 1,0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김치국씨는 2004년 8월 10일 동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였으며, 동년 8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이 경우 김치국씨가 2004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세목과 세목별 납부기한은? 단, 납부기한은 X월 X일 형태로 답하시오.

**- 끝 -**

**세 법**

**제1교시**

**13/16**

여 백

**세 법**

**14/16**

**제1교시**

여 백

여 백

**세 법**

**제1교시**

**15/16**

**세 법**

**16/16**

**제1교시**

여 백